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제 5 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(2차)

성 명 : 국유재산(목상동 218-7 등 3필지)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(신원미상)

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7 등 3필지

귀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고 국유재산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7 등 3필지」을 시설물 적치 등의 용도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

이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, 철도시설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음을 물론, 방치할 경우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바,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, 제82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26일(금)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대집행 방법
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7 등 3필지	무단적치물 (폐목재 등)	인력, 장비,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물건 일체를 강제 철거 (국가철도공단)

2024. 4. 12.

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

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제 6 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(2차)

성 명 : 국유재산(목상동 218-18 등 2필지)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(신원미상)

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18 등 2필지

귀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고 국유재산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18 등 2필지」을 시설물 적치 등의 용도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

이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, 철도시설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음을 물론, 방치할 경우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바,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, 제82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26일(금)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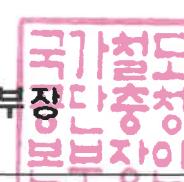
*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대집행 방법
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-18 등 2필지	무단적치물 (컨테이너 등)	인력, 장비,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물건 일체를 강제 이동 (국가철도공단)

2024. 4. 12.

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

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제 7 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(2차)

성 명 : 국유재산(덕암동 183-6 등 2필지)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(신원미상)

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3-6 등 2필지

귀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고 국유재산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3-6 등 2필지」을 시설물 적치 등의 용도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

이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, 철도시설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음을 물론, 방치할 경우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바,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, 제82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26일(금)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대집행 방법
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3-6 등 2필지	무단적치물 [창고(농기계 보관 등)]	인력, 장비,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물건 일체를 강제 철거 (국가철도공단)

2024. 4. 12.

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

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제 8 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(2차)

성 명 : 국유재산(덕암동 185-11 등 2필지)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(신원미상)

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-11 등 2필지

귀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조를 위반하고 국유재산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-11 등 2필지」을 시설물 적치 등의 용도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

이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, 철도시설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음을 물론, 방치할 경우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바,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, 제82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26일(금)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대집행 방법
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-11 등 2필지	무단적치물 [창고(농기계 보관 등)]	인력, 장비,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물건 일체를 강제 철거 (국가철도공단)

2024. 4. 12.

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

